붙임 2-1

지 원 자 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 주민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재산과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참여배제 대상(사업공고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 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 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가구의 소득합산액)으로 판단

2023년 소득판정(소득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75%)

(단위: 천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소득기준	1,558	2,592	3,326	4,050	4,748	5,420	6,080	6,740	7,399	8,059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예외적인 참여대상자: 대학교(원) 졸업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붙임 2-2

전형별 제출서류

□ 서류전형

○ 필수(8종)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신청자 및 가구원에 대한 제공하도록 요구 동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에 대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⑤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배우자 관련 제공 동의)
⑥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가구원 관련 정보 확인)
⑦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가족 정보 확인)
⑧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 해당자(1종)

①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 가점대상자(7종)

①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등)
② 여성세대주 관련 증빙서류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여성, 배우자 없는 기혼여성 등)
③ 재산4억초과 가감조정 서류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④ 경력증명서 사본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공사 안전요원 경력자)
⑤ 경호관련 자격증 사본 (공인무도단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⑥ 자기소개서
⑦ 국민체력100 참여증명서 및 등급표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기준)

□ 면접전형(2종)

○ **기본증명서** (결격사유 조회용)
○ **주민등록초본** (병역 확인용)

※ 제출서류 유효 기준일

○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취득·유효한 경우에 한함, 원본 지참
○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공고일('23.03.03.) 이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23.03.13) 까지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등본은 공고일('23.03.03.)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붙임 2-3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류전형 평가항목(우대조건)

평가항목		판단 기준	가점(100)	비고
동행 일자리 사업 선발 기준 표준 (안)	재산상황 (건축물, 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점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7점 •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점 • 3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점	10 (10,7,3,1)	일모아시스템 재산조회 결과 (69백만원 공제 후 판단)
	공공일자리 사업참여	**당해 사업 기간 포함 최근 2년** • 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 10점 • 3개월 미만 참여 : 5점 • 3개월 이상 참여 : 3점	10 (10,5,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세대주	**세대주 여부**	10 (10,0)	
	부양가족 수 (세대주, 동거인 제외)	**3명 이상, 2명, 1명, 없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15 (15,10,5,0)	주민등록표 확인
	취업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 세대주, 국가유공자 등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15 (15,0)	중복가점 불가
	자격요건	**당해 분야 자격 소지 여부** • 자격증 2개 이상 : 10점 • 자격증 1개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10 (10,5,0)	• 공인무도단증 •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2급
공사 채용 요건	정성평가	**자기소개서** • 수·우·미·양·가 : 2점씩 차등	10 (10,8,6,4,2)	
	정량평가	**체력평가(15) - 국민체력100인증** • 체력인증서(1,2,3등급) - 15점 • 참가증 - 10점 • 미제출 - 0점	15 (15,10,0)	
		경력평가(5) • 퇴직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 공사 안전요원 경력 등 보유 시	5 (5,0)	• 경력증명서 제출

□ 서류전형 심사기준(자체 선발기준)

구분		분야	세부 평가기준	배점기준	배점	확인 서류
동행일자리요건	자격요건	공인무도단증		· 자격증 2개 이상 : 10점 · 자격증 1개 : 5점 · 자격증 없음 : 0점		- 공인무도단증 등 확인
		일반경비지도사				- 자격증 등 확인
		응급구조사 1·2급				- 자격증 등 확인
공사 자체요건	정성평가	자기 소개서	- 공공근로자로서의 자세 - 봉사정신(구체적 사례) 및 친절성 - 직무에 대한 적극성 - 성실함 및 책임감	수	10	- 업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채용분야와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	8	
				미	6	
				양	4	
				가	2	
				미제출	0	
	경력지표	경비 및 방호근무 (청원경찰, 경찰서 등) 경력자		· 군, 경찰청, 경찰서, 자구대 등 근무경력 · 세콤, 에스원 등 경비업체 근무경력, · 공공기관 및 단체, 일반회사 등의 청원경찰, 공사 안전요원 근무경력	5	- 경력증명서 확인
	체력지표	국민체력100 지표		1등급	15	- 체력인증서 - 참가증
				2등급		
				3등급		
				등급외(참가증제출)	10	
				미참여	0	

※ 공인무도단증은 인정단체에서 취득한 단증에 한함.

※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인증서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증서에 한함.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기준

구 분	내 용
평가방법	• **집단면접, 블라인드 면접 실시**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 요소별 배점(15점 만점)**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3점) - 업무적합성 및 경험 (3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점)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3점) -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3점)

붙임 2-4

채용결격 사유

□ 관련근거 :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붙임 2-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대상자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전형 당일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반드시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응시자 외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